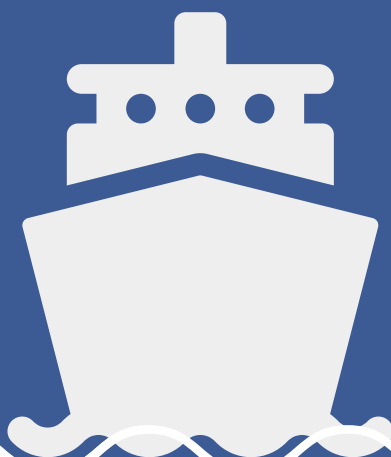


알기 쉬운
해양사고
조사·심판절차
안내서

공정한 조사, 신뢰받는 심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1. 해양사고 조사절차

해양사고 발생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 관련 인명사상, 선박 운용 관련 선박이나 육상·해상시설의 손상, 선박의 멸실·유기 또는 행방불명, 선박이 충돌·좌초·전복·침몰되거나 조종불가,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해양사고 접수(지방해양안전심판원)

(1) 접수경로

- 해양수산관서, 경찰공무원, 지자체, 영사 등으로부터 해양사고 발생 통보
- 지방심판원 자체인지(신문, 방송 등)
- 이해관계인의 사실조사 요구

(2) 지방해양안전심판원별 관할구역



비해당 처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비해당처리
(예시) 부유물감김사고 시 해상부유물 자체제거 후 정상운항

해양사고 조사

현장을 검사와 증거자료를 수집하며, 해양사고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면담·화상·서면·전화)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타기관과 조사 공조

해양사고 조사 결과(처분)

심판불필요 처분

해양사고 조사 결과 **심판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판불필요 처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46조(심판불필요처분의 기준)

-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고
- 해양사고 원인이 간명하거나 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고
- 기타 심판불필요 기준에 해당하는 사고

심판 청구

해양사고 조사 결과, **심판에 부쳐야 할 사건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방심판원에
심판을 청구**

2. 해양사고 심판절차

심판 청구

- (1) 심판부 구성
- (2) 심판기일 지정 및 통지
- (3) 심판변론인 선임

심판

- (1) 심판장 개정선언
- (2) 인정신문
(해양사고관련자, 증인 등)
- (3) 조사관 최초진술
- (4) 사실심리
(심판관, 조사관 및 심판변론인)
- (5) 조사관 의견진술
- (6) 해양사고관련자(또는 심판변론인)
최후진술
- (7) 심판장 변론종결 고지



재결

- (1) **재결의 고지**: 재결기일에 심판정에서 심판장이 고지
* 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재결(裁決)**로써 해양사고가 면허해양사고 관련자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당자를 징계** 하며, 필요시 일반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합니다**.
- (2) **재결서의 송달**
* 재결을 고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결서의 정본을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에게 송달합니다.

확정

- (1) 제2심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2심의 청구 기간(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 (제2심청구) 해양사고관련자는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심청구서를 원심심판원에 제출하여 제2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각각 재결서 또는 각하 결정서 정본을 송달 받은 때**

재결집행

구분	제1심	제2심
집행시기	제1심이 확정된 때	재결을 고지한 때 (소송 제기 여부에 관계없이 징계 집행)
집행자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3. 징계 집행절차

징계의 종류

대상	처분 종류	징계자 조치사항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 (해기사 또는 도선사)	면허취소	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면허증을 제출
	업무정지	
	견책	없음
일반 해양사고관련자	시정 · 개선 권고 또는 명령	필요시 지정된 기한까지 조치결과를 제출

무효선언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재결이 확정되어 면허증 제출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증의 무효를 선언**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합니다.

징계의 집행유예

집행유예 요건

심판원이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징계(업무정지) 대신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단,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지침'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제외)

집행유예 기간

3개월 이상 9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징계의 집행을 유예
* 징계기간별 직무교육 이수시간
- 1개월(14시간) / 2개월(21시간) / 3개월(28시간)

교육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콜센터 ☎1899-3600)

집행유예의 효과 및 실효

(효과)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징계를 집행한 것으로 간주**
(실효) 집행유예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재결을 받아
그 재결이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

4. 민원인 편의제도



면허증의 제출유예 제도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승선 등의 사유로 면허증을 제출기한 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출유예신청서를 관할 심판원에 제출**하여 그 사유가 부득이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 해당 면허증의 제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면허증 제출 유예기간

1. 선원근로계약이 있는 해양사고관련자 :
선원근로계약 종료일부터 2주 이내 기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단, 선박검사증서 상의 항행구역 및 종사하는 어업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선원근로계약이 없는 해양사고관련자 :
선박검사증서 상의 항행구역 및 종사하는 어업의 종류에 따라 최대 1~6개월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선심판변론인 제도

해양사고관련자가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70세 이상 고령자,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 등)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심판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권으로 심판변론인을 선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원격영상심판 제도

해양사고관련자가 **교통의 불편 등으로 관할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영상심판장치가 갖추어진 원격지 심판정에 출석하여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환의 면제 제도

심판기일에 해양사고관련자를 소환하여야 하나, 1회 이상 출석하여 **추가 신문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비대면 처리 제도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해양사고관련자가 관할 **심판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해기사 면허증을 제출 또는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적 ·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항상 심판을 청구하나요?**

아니오.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이 해양 사고를 조사한 결과, **사건을 심판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불필요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조사관으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은 경우, 참석해야 하나요?**

네. 조사관은 해양사고관계인에 대한 출석·조사·자료 제출 처분 권한이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해양사고의 원인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는 제외됩니다.

?

면허증 제출 통지를 받았는데, 승선 중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기사가 승선 등의 이유로 기한 내 면허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출유예신청서 및 증빙서류(선박검사증서, 근로계약서 등)를 관할 심판원 수석조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석조사관이 인정하는 경우 면허증의 제출을 유예 할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처분을 받았지만, 면허증을 제출하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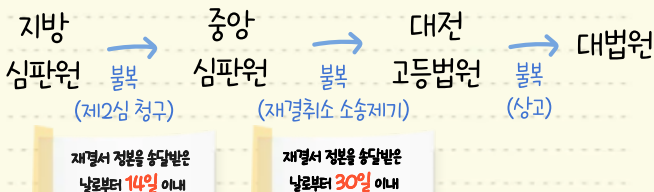
네. 집행유예기간 내 해양사고관련자가 업무정지 집행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정지집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제출하게 되면, 집행유예기간 내 집행 유예를 실효하고 해양사고관련자의 **면허증을 제출받아 업무정지재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①**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불복 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대전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5. 자주 묻는 질문

Q&A



?

재결서를 받은 날 바로 업무정지가 시작되거나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오. **재결은 확정된 후에 집행**하며, ①업무정지 재결은 해양사고관련자가 **해기사면허증을 제출한 날(우편 등으로 제출 한 경우 발송일)로부터 업무정지가 시작**되고, ②징계의 집행유예 재결은 직무교육 이수 명령에 따라 **집행유예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선박의 소유자인데, 재결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심판원장이 재결을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 변론인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달합니다. 즉,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되지 않은 선박소유자는 재결서의 송달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결서 사본을 중앙해양안전 심판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심판참여 등이 가능한가요?

네. 해양사고의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자로서 해양사고의 심판 또는 재결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심판장의 허가를 받고 심판에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심판기일 통지, 심판변론인 선임, 관계 서류의 열람 복사 등의 권한을 갖게됩니다. 또한, 단순 방청을 희망할 경우 **공개된 심판정에서 진행되므로 누구든지 방청할 수 있습니다**.

?

해양사고관련자와 해양사고관계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①**해양사고관련자**는 심판청구 시 해양사고의 발생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자로 해기사면허 소지 여부에 따라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구분하며, ②**해양사고관계인**은 조사 시 해양사고와 관련된 사람 또는 **해양사고의 발생 원인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증거가 될만한 상태를 목격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선원 또는 여객을 포함합니다.

?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는데, 면허증을 언제 수령할 수 있나요?

업무정지재결을 받은 해기사의 면허증은 **업무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만료일의 다음날 이후 직접 수령가능하며, 우편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의 오후에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단, 만료일 또는 만료일의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 후 다가오는 첫 업무일 이후 직접 수령 가능하며, 우편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전 마지막 업무일 오후에 우편을 발송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STEP 1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 접속

<https://www.kmst.go.kr> / 검색창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입력

중앙해양안전심판원...



STEP 2

QR 코드 스캔하고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 확인

☑ 조사심판 일정



사건번호 또는 사건명을 입력하여 해양사고 조사 진행단계 및 심판기일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결서 열람



해양안전심판 재결서 사본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해양사고 통계



해양사고의 선박용도별, 사고종류별 해양사고 통계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 게시판



조사 및 심판 관련 부패 및 갑질행위 발생 시, 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에 익명으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